



「2022년 시험대비」
세법 출제영역별 모의고사(4)

| 김용민 교수 | 박문각남부고시학원

[출제영역 : 부가가치세법]

17.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②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정답] ① ♣ 난이도 중

【해설】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출제영역 : 부가가치세법]

18.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영세율적용대상 수출인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해당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기간 만료 전·후에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사업자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기가 제조한 수출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제조장이다.

[정답] ④ ♣ 난이도 중

【해설】

- 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②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 ③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해당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대기간 만료 전·후에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출제영역 : 소득세법]

19.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이 2명인 경우에 연 6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도 재해손실세액공제대상이 된다.

- 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법정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정답] ① ♣ 난이도 하

【해설】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로서 7세 이상의 사람이 2명인 경우에 연 30만 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출제영역 : 소득세법]

20.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금액계산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②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출자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③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 ④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정답] ② ♣ 난이도 하

【해설】

- ②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